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0800030  
신청인: 주식회사 한화  
피신청인: Michael Cho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주식회사 한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24층

피신청인: Micheal Cho, 11-19, GREENFELL STREET, ADELAIDE,  
SA5000 000000, AU.

분쟁도메인이름들은 “hanwh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이덴티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08. 9. 19.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 9. 19.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 9. 19.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 9. 2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8. 9. 22.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8. 9. 30. 잘못된 주소로 인해 배달예외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배달조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2008. 10. 1.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8. 10. 19.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 10. 20.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답변서미제출통지를 2008. 10. 21.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08. 10. 21.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장문철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 10. 21. 장문철 조정위원회는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08. 10. 22.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 10. 28.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 10. 28. 조정부에서 송부하였고 2008. 10. 29.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한화는 한화그룹 계열회사의 모회사로서 1952.10에 설립되었고 현재 화약류 방산사업을 위시하여 석유화학류 유화사업 그리고 비철금속 및 철강 등 금속사업 그리고 기계, 합성수지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 제7호증) 신청인을 포함한 한화그룹은 건설 제조 분야, 금융부문 및 학교법인 등 4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갑 제8호증) 신청인은 국내 전국 각지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신청인을 포함한 한화그룹이 20여개국에 53개 해외 사업장을 설치 운영 중이다. (갑 제 9호증)

신청인은 1993.10 이래 “한화” 와 ‘HANWHA'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 및 서비스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갑 제2호 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해당 명칭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내지 2, 갑 제5호증의 1내지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 등에서 예시함). 또한 신청인은 1994. 6. 9자로 <hanwha.co.kr>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하여 왔다. (갑 제11호증)

한편 피신청인은 2001.7.3 분쟁도메인이름 <hanwha.com>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 및 서비스표인 “한화” 또는 “HANWHA”와 동일하다.

(ii)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한화” 또는 “HANWHA”라는 표지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은 바 없고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초로 한 웹사이트를 운영한 바도 없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주지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내 이메일 답신에서 고가의 금액인 미화 55,000불에 판매할 의도를 보였으므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입증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 <hanwha.com>의 주요부분인 “HANWHA”는 신청인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a)(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한화” 또는 “HANWHA”라는 표지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한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본 조정부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7년이 지나도록 보유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답신에서 일부 해외 고객들 중에 착오로 신청인이 관리하는 hanwha.co.kr에 보낸 이메일을 피신청인 자신이 관리하는 hanwha.com 이메일로 잘못 보내오고 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알리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고가의 금액인 미화 55,000불에 판매할 의도를 보였다. 셋째, 피신청인이 현재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추후에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상표를 주요부분으로 하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자사이에 밀접한 후원관계나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hanwha.com>을 신청인인 주식회사 한화에 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장 문 철  
1인 조정부

결정일: 2008년 11월 11일